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8가단5185124(본소), 2019가단5163312(반소) 판결
[담장철거등 청구의 소 ·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석

피고(반소원고)B

피고1. C

2. D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빛

담당변호사 임종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1, 2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태

변론 종결2020. 7. 10.

판결 선고2020. 9.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동작구 E 대 179㎡ 중 별지 도면 표시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담장 및 별지 도면 표시 1, 11, 10,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다) 부분 1㎡에 설치된 계단을 각 철거하라.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4,454,893원 및 그 중 2,080,727원에 대하여는 2018. 9. 7.부터,

2,374,466원에 대하여는 2020. 7.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1,387,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피고 D는 1,387,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서울 동작구 E 대 1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8㎡ 중 3/14 지분에 관하여 201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반소원고)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가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 2항과 같다.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B에게 서울 동작구 E 대 1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8㎡에 관하여 2007. 7.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서울 동작구 E 대 1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8㎡에 관하여 201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작구 E 대 179㎡(이하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5. 10. 16.경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7. 12. 16.경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2. 7. 10.경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7. 7. 22.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그 후 1988. 10. 22. E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J, K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4. 12. 31. K가 소유하고 있던 E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5. 11. 14. E 전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5. 11.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서울 동작구 M 대 126㎡(이하 'M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1973. 8. 23.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73. 9. 5.경 N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74. 5. 28.경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0. 5. 6.경1)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7. 6. 24.경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8. 12. 28.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2) 다. R은 2017. 4. 26. 사망하였는데, 이후 망 R(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배우자)과 피고 C, D(자녀들)는 M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피고 B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7. 8. 4. M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4.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 토지와 M 토지는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현재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는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이하 E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 부분을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이,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 10,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다) 부분 1㎡에는 이 사건 주택의 계단(이하 E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 부분을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이 각 설치되어 있고,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8㎡(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의 부지 중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계쟁부분의 월임료 및 기간임료는 다음과 같다.

2008. 7. 13. ~ 2009. 7. 12.	88,000	1,056,000
2009. 7. 13. ~ 2010. 7. 12.	75,000	900,000
2010. 7. 13. ~ 2011. 7. 12.	79,000	953,000
2011. 7. 13. ~ 2012. 7. 12.	79,000	953,000
2012. 7. 13. ~ 2013. 7. 12.	83,000	998,000
2013. 7. 13. ~ 2014. 7. 12.	102,000	1,220,000
2014. 7. 13. ~ 2015. 7. 12.	107,000	1,282,000
2015. 7. 13. ~ 2016. 7. 12.	110,000	1,319,000
2016. 7. 13. ~ 2017. 7. 12.	113,000	1,358,000
2017. 7. 13. ~ 2018. 7. 12.	122,000	1,464,000
2018. 7. 13. ~ 2019. 7. 12.	120,000	1,436,000
2019. 7. 13. ~ 2019. 12. 5.	131,000	63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작지사장, 주식회사 S에 대한 각 감정축타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작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계단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78. 12. 28.부터 2017. 4. 25.까지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2,080,727원[= 4,855,031원(2008. 7. 26.부터 2017. 4. 25.까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1/2 상당액)3) × 법정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는 각 1,387,151원(= 4,855,031원 × 법정상속분 2/7)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4.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7. 10.까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1/2 상당액인 합계 2,374,466원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취득시효 항변 및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2007. 7. 22. 또는 201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참조).

나)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3987 판결 참조).

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20년간의 점유 여부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E 토지에 관하여 1975. 10. 16.경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05. 11. 8. 원고가 E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E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망인 내지 그의 전 점유자가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나) 먼저 망인이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때인 1978. 12. 28.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1978. 12. 28.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12. 28. 당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자는 J, L였는데, 그 후 2005. 11. 8.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 망인은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5. 11. 8.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2005. 11. 8.을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도 없다).

다) 다음으로 망인의 점유와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신축자가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때인 1973. 8. 23.경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5) 1973. 8. 23.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8. 23. 당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자는 J, K인데, 그 후 1994. 12. 31. 이 사건 계쟁부분 중 K가 소유하고 있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L가 취득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 망인은 이 사건 계쟁부분 중 1/2 지분에 대하여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된 1994. 12. 31.을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12. 31. 2차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므로, 망인은 당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중 1/2 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한편, L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계쟁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1. 8.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차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계쟁부분 중 J가 소유하고 있던 1/2 지분에 관하여도 2005. 11. 8.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2005. 11. 8.을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한편 피고들은, 망인이 1978. 12. 28.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이후 1987. 7. 22.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이 I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점유자인 망인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자가 변경된 1987. 7. 22.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된 경우라고 할 것인데, I가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87. 7. 22.경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1973. 8. 23.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망인은 2014. 12. 31. 이 사건 계쟁부분 중 1/2 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후 망인이 2017. 4. 26.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중 3/14 지분(= 1/2 지분 × 법정상속분 3/7)에 관하여, 피고 C, D에게 각 이 사건 계쟁부분 중 2/14 지분(= 1/2 지분 × 법정상속분 2/7)에 관하여 각 201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⁶⁾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계단을 철거하고,⁷⁾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부당이득으로 4,454,893원(= 2,080,727원 + 2,374,466원) 및 그 중 2,080,72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9. 7.부터, 2,374,46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7.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부당이득으로 1,387,1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5.부터, 피고 D는 부당이득으로 1,387,1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⁸⁾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중 3/14 지분에 관하여 201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이영은

별지

1) 폐쇄등기부상의 기재가 명확치 않아 확인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기재하였다.

2) R은 1978. 12. 28. M 토지에 관하여도 1978.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부당이득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계쟁부분의 월임료 및 기간임료는 앞서 본 바와 같다).

2008. 7. 26. ~ 2008. 8. 12.	44,000	25,548	44,000 X (18/31)
2008. 8. 13. ~ 2009. 7. 12.	44,000	484,000	
2009. 7. 13. ~ 2010. 7. 12.	37,500	450,000	
2010. 7. 13. ~ 2011. 7. 12.	39,500	476,500	
2011. 7. 13. ~ 2012. 7. 12.	39,500	476,500	
2012. 7. 13. ~ 2013. 7. 12.	41,500	499,000	
2013. 7. 13. ~ 2014. 7. 12.	51,000	610,000	
2014. 7. 13. ~ 2015. 7. 12.	53,500	641,000	
2015. 7. 13. ~ 2016. 7. 12.	55,000	659,500	
2016. 7. 13. ~ 2017. 4. 12.	56,500	508,500	56,500 X 9
2017. 4. 13. ~ 2017. 4. 25.	56,500	24,483	56,500 X (13/30)
합계금		4,855,031	

4) 부당이득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7. 4. 26. ~ 2017. 5. 12.	56,500	32,016	56,500 X (17/30)
2017. 5. 13. ~ 2017. 7. 12.	56,500	113,000	
2017. 7. 13. ~ 2018. 7. 12.	61,000	732,000	
2018. 7. 13. ~ 2019. 7. 12.	60,000	718,000	
2019. 7. 13. ~ 2020. 6. 12.	65,500	720,500	65,500 X 11
2020. 6. 13. ~ 2020. 7. 10.	65,500	58,950	65,500 X (27//30)
합계금		2,374,466(원, 원미만은 버림)	

5) 한편, 이 사건 계쟁부분의 점유자이자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1973. 8. 23.부터 망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8. 12. 28. 사이에 여러

차례 변경된 바 있으나, 각각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1973. 8. 23.을 기산점으로 삼을 경우 및 망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8. 12. 28.을 기산점으로 삼을 경우와 결론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위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6) 한편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B이 M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M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쟁부분 중 1/2 지분에 관한 201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중 3/14 지분에 관하여 201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B이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부분 중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계단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8) 한편 피고 C, D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은 본질이 사용료이고, 차임의 경우 민법 제163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C, D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C,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